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해설본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킬러 문항 중심 분석 -

- 7. 시민 불복종(롤스)
- 10. 자연과 윤리(데카르트, 레건, 레오폴드)
- 13. 형벌론(루소, 베카리아, 칸트)
- 15. 해외 원조(롤스, 싱어)
- 18. 분배 정의(롤스, 노직)
- 20. 평화론(칸트, 갈통)

민 제 이  
생활과 윤리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개인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자연적 의무를 지니므로 정의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부정의한 법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시민 불복종 이론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정당한 시민 불복종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 ①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②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③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사회에 위협이 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부정의에도 저항할 것을 합의한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해

[정답 해설]

②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정책이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그것이 시민 불복종의 요건이 될 수 있는가? '공직'이라는 것은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직책이다. 그러면 위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특정한 직책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의 요건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일단 이 선지의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또 알아보아야 할 사상은 롤스가 정확히 어떠한 경우를 시민 불복종의 요건으로 삼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경우
  - 정의의 원칙 중 다음의 원칙을 침해할 때
    - ① <제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 ② <제 2원칙> 中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X)
- 2.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이 소진되었을 때
- 3. 거의 정의로운 체제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일 때

<롤스가 주장한 시민 불복종의 주요 요건>

몇몇 요건이 더 있지만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위의 3가지를 대전제로 깔고 간다. 이 중에서 ②번 선지와 관련이 있는 시민 불복종의 요건은 '1-②. 기회균등의 원칙'의 침해이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상세하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까의 선지를 포함하여 논리를 펼쳐보자.

STEP 1.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비록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TEP 2. 공직도 하나의 직책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STEP 3. 이러한 개방을 막는 것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손상하는 것이다.

STEP 4. 그런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STEP 5. 따라서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②번 선지는 정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의 키포인트는 정의의 원칙 중에서 시민 불복종의 요건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었다. 솔직히 이 문제, 여타의 시민 불복종 문제보다도 어려웠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맞았더라도, 훨씬 자세한 복습과 심층 학습이 요구된다.

+ )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표에 써놨지만 시민 불복종의 요건이 될 수 없다. 이는 자세히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롤스가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시민 불복종이 아닌 정치적 과정에 의하여 판단될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다르게 말하면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심각한 부정의의 반열에 들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를 위해 다음 논문을 첨가한다. 굳이 안 읽어도 되며,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넘겨도 상관없다.

롤즈가 차등원칙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롤즈의 시민불복종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중대하고 명백한'의 의미는 무엇일까? '중대한 위반'이란 그 위반이 해결되었을 때 다른 부정의도 해결될 수 있는 위반을 의미하며, '명백한 위반'이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과 기회균등에 대한 위반만을 의미한다.79) 이 두 원칙의 위반 여부는 명백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등원칙의 위반은 명백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사회경제적 정책에 관한 것이기에 객관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등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치과정에 위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롤즈는 주장한다.

-이미란, '존 롤즈의 시민 불복종론에 관한 고찰(2016)'

TIP. 이러한 선지가 나오면 X표 치고 넘어가면 된다.

Q1. 롤즈: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X)

Q2. 롤즈: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것이다.(X)

[오답 해설]

①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롤즈가 아니라 싱어가 주장할 내용이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도 하고 공리의 원리에 부합할 때 비로소 시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싱어의 입장으로 나왔으면 맞는 선지이다. 추가로 보충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싱어가 공리주의자이긴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항상 따라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심각한 도덕적인 위반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싱어는 다수의 정의감 이외에도 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은 현저한 부정의도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롤즈와 싱어는 공통적으로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즈는 다수의 정의감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된다고 보았으나, 싱어는 다수의 정의감 이외에 현저한 부정의(다수의 지지도 받지 않은)도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2021 수능특강 해설지 29p]

③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사회에 위협이 된다.

롤즈의 시민 불복종은 [정답 해설]에 써놓았듯 '거의 정의로운 체제'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경우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거의 정의로운 체제'란 사회 체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롤즈가 조건화시킨 시민 불복종을 잘 이행한다면, 사회 체제의 손상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롤스는 '정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절하게 잘 통치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제도는 전복적 주장에 의해 그렇게 쉽게 전복될 수 있을 만큼 취약하지도 불안정하지도 않다. 현명한 정치 리더십은 그와 같은 주장을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들을 것이다.

-존 롤스, '정의론'-

'전복적 주장'은 시민 불복종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고로 거의 정의롭고 적절히 잘 통치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 불복종으로 해가 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③번에서 '시민 불복종이 그 자체로 사회에 위협이 된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④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한다 = 현재의 헌법은 잘못되었다'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 말은 시민 불복종의 내용에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박 가능하다.

첫째, 교육과정 내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평가원이나 EBS에서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서는 위법이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시행된다는 내용이 수차례 나왔다는 것이다. 고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법체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롤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또한, 2020년도 9평에 '롤스: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가 오답으로 나왔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시민 불복종이 민주 헌법의 의도에 합치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단서들로만 가지고도 수험생들은 ④번 선지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둘째, 롤스는 애초에 입헌 민주체제를 긍정한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입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은 입헌 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이 위반될 때, 이를 막고 해당되는 시민 불복종의 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롤스의 입장에서 아예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부정의에도 저항할 것을 합의한다.

이 선지는 많이들 알 것이고, [정답 해설]의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주요 요건>에서 적어놓았듯 시민 불복종 시 모든 부정의가 아닌 심각한 부정의에만 저항하여야 한다. '어떠한 부정의에도=모든 부정의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자면, 롤스가 말하는 심각한 부정의란 평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018년도 6월 모의평가]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이 세상에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p> <p>을 : 일부 포유동물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p> <p>병 :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한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p>
(나)	

— < 보 기 > —

<p>ㄱ. A: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p> <p>ㄴ. B: 사유 능력 여부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p> <p>ㄷ. C: 살아 있는 모든 개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공동체의 일원이다.</p> <p>ㄹ. D: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한정된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p>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출제 의도] 데카르트, 레건, 레오폴드의 자연관 이해

[정답 해설]

ㄷ. C: 살아 있는 모든 개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공동체**의 일원이다.

**데카르트: X, 레건: X, 레오폴드: O**

이 선지의 키포인트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공동체'이다. 이 말은 즉슨 도덕적으로 고려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생운 자연과 윤리 교육과정에서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고

려하는 사상은 생태주의밖에 없다. 인간 중심주의자는 인간만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는 둘 다 개체론자로서 어떠한 개별 개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공동체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기출로 출제된 적도 있다.

테일러: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하는가?(X)

[2018년도 9월 모의평가]

이와 같이 생명 중심주의자인 테일러도 생명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생명 공동체 그 자체의 선이 아니라, 개별 생명체의 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달리 레오폴드는 이렇게 말한다.

레오폴드: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르다.

[2021년도 수능특강]

여기서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득 학생들 중에서는 선지를 보고 '생명체들은 공동체의 한 부분이니까 레오폴드 말고 다른 사상가들도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도덕적 고려 대상인 공동체'라는 것이다. 즉, 레오폴드만이 생명 공동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레오폴드만의 입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ㄷ 선지는 옳다.

ㄷ. D: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한정된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데카르트: X, 레건: O, 레오폴드: O

= '인간만이 생명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해석 가능하다. 이 선지는 옳다. 그냥 인간/동물/생명/생태 중심주의로만 크게 구별해도 알 수 있다. 저 선지는 본래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자를 제외하고 동물/생명/생태 중심주의자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인간중심주의자인 데카르트를 제외하고, 레건은 삶의 주체인 인간+1세 이상의 포유동물의 권리,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므로, ㄷ 선지는 옳다.

[오답 해설]

ㄱ. A: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데카르트: O, 레건: X, 레오폴드 O

생활과 윤리 개념을 아직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했다면 이 문제에서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데카르트가 이 선지에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은 데카르트가 인간 중심주의자라는 사실만 알아도 쉽게 할 것이다. 데카르트는 동물이 고통도 쾌락도 느낄 수 없는 기계일 뿐이라고도 간주했고, 동물의 내부 장기와 같은 상태는 흔히 로봇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했다. 따라서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문제는 레건과 레오폴드이다. 필자의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맞춘 학생도 다시 한 번 이 분석을 보는 것이 좋겠

다는 생각을 한다. 그럼 한번 레건과 레오폴드의 입장을 알아보자.

### ① 레건

레건은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반대한다**(2021년도 수능특강 48p). 그렇기에 레건은 다음의 원전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The fundamental wrong is the system that allows us to view animals as our resources, here for us - to be eaten, or surgically manipulated, or exploited for sport or money.

해석: **근본적인 잘못된 점은 우리가 동물들을 우리의 자원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서(이 시스템에서는) 우리는 동물들을 먹거나, 외과적으로 조작하거나, 스포츠나 돈을 위해 착취할 수 있다.

-Tom Ra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또한 레건은 이러한 주장을 덧붙여 윤리적 채식주의를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레건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농장동물의 사육과 소비, 야생동물 사냥과 털을 이용한 포획 방식, 멸종 위기종 동물의 보호, **과학에서의 동물 이용 등이 동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날달이 밝히며** 채식주의의 선택이 왜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하는지를 주장하고 있다.

-Tom Ra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 김일방, "동물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재인용-

수험생들은 원전을 잘 몰랐어도 위의 수능특강 문장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두 개의 원전 지문은 문제를 맞추어도 한 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시간이 없다면 형관펜 친 부분만 읽어봐도 좋다.

### ② 레오폴드

레오폴드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생태계 전체로 확대한다. 그래서 인간, 동물, 나머지 생명체, 대지 모두 윤리적 고려 대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에 **긍정의 대답을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사실 이 선지에 대한 것은 한 두번 정도 자연과 윤리 파트를 깊게 공부하였다면 맞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ㄷ과 ㄹ선지가 고르기 쉽고, (ㄱ, ㄷ, ㄹ)의 번호가 없어서 소거법으로 그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한낱 모의고사일 뿐이며, 수능을 위하여 분석은 철저히 해야 하는 법이다. 한번 레오폴드의 입장도 파악해보자.



일단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한 것은 맞다. 하지만,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 그 자체를 위하는 것에 더욱 치중하여 개별 생명체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기도 하다.** 실제로 레오폴드가 주장한 대지 윤리에서는 개체로서의 생명의 가치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균형을 중시한다.(2021년도 수능특강) 그리하여 레오폴드는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펼친다.

물론 **대지윤리가 인간에게 이 '자원들'(흙, 물, 식물, 동물 등)의 사용과 관리, 혹은 변화를 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존재할 권리,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더라도 자연상태 그대로 생존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레오폴드, “대지 윤리”-

제시문에서 형광펜 친 부분이 선지와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레오폴드는 이와 같이 동물들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존권을 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다. 따라서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맞는 선지가 된다.

ㄴ. B: **사유 능력 여부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

데카르트: X, 레진: O, 레오폴드: O

이 선지도 인간/동물/생명/생태 중심주의에 대한 큰 구별만 있다면 맞출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우선 인간만이 사유할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내에서 모두 동의할 내용이지만, 이러한 사상에서 학자마다 서로 다른 사상이 파생된다. 우선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사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므로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레진과 테일러는 이에 반대한다. 레진은 ‘삶의 주체’의 자격이 되는지를 도덕적 지위의 결정 기준으로 볼 것이고, 레오폴드는 대지 전체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 누구나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에 의해 강제를 당하게 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진다.

을 :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다. 사형은 결코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민 한 사람과 별이는 전쟁이다.

병 :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 ① 갑: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 ② 을: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다.
- ③ 병: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다.
- ④ 갑, 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 ⑤ 을, 병: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루소, 베카리아, 칸트의 형벌론 이해

갑: 루소, 을: 베카리아, 병: 칸트

[정답 해설]

② 베카리아: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다.

형벌론이라는 킬러 파트 치고는 쉬운 문제였다. 정답 선지를 포함한 모든 선지가 EBS 만 보아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내용이므로, 수능 때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단 베카리아는 사형이 아니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내용은 기출에서도, EBS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선지이다.

베카리아: 노역의 불행한 매 순간을 완전히 집약하게 되면 그것은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다. 사형은 한 순간에 모든 고통을 집결시킨다. 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걸쳐 분산된다. 바로 이것이 종신 노역형의 상대적 이점이다. 노역형은 수형자보다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 준다.

베카리아: 종신 노역형은 단지 한 범죄자만 있어도 그를 통해 지속적인 본보기 를 제공할 수 있다.

[2021년도 수능완성]

이와 같이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지속적이고, 가장 큰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이와 달리 사형은 한 순간의 고통만 집결시킬 뿐이라고 본다.

[오답 해설]

① 루소: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사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사형 차원에서의 사회 계약의 구체적인 배경은 살인범에 의하여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지만 이를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살인범이 될 때에도 똑같이 사형에 처해지겠다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또한 루소는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 구성원, 즉 시민이라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긴다. **따라서 살인을 저지른 후에는 더 이상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 취급받는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은 시민이 아니게 됨을 입증하였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사회 계약에 동의한 시민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며, 살인을 하게 될 때 받게 될 처우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 즉 시민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루소: 사회 계약의 목적인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얼마간의 인적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다. **남들을 희생시켜 자기 생명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할 때에는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한다. 죄인을 죽일 때는 '시민'으로서보다는 적으로서 죽이는 셈이다.**

[2021년도 수능완성]

③ 칸트: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다.

선지를 분석하기 전에, 제시문을 읽은 후 웬지 학생들 중 병이 칸트가 확실히 맞는지 의문이 든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에 먼저 제시문부터 분석한다.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이 조언은 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생활과 윤리에서 제시문을 판독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과 사상가의 주요 포인트를 캐치해야 한다. 만약, 제시문을 분석하는 공부가 선행되지 않고 사상가별 키워드에만 집착하면(예를 들어 칸트에서의 '정언', 롤스에서의 '정의의 원칙' 등에만 집착하는)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제시문 독해가 오래 걸려 시간이 늦춰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많이하기를 권장한다.

아무튼 간에, 이 선지는 당연히 칸트이다. 보라색 형광펜을 친 이유는 혹여나 학생들 중이 문구를 보고 '계약? 베카리아? 루소?' 이럴까봐 쳐 놓은 것이다. 당연히 나머지 두 사상가가 베카리아와 루소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현재 제시문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즉 사람을 죽였다면 그 이유만으로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가 주장한 보복법의 원리, 동해 보복의 원리, 인과 응보의 원리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베카리아의 입장과 동일하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에 생명을 담보로 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입장을 칸트는 법의 왜곡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지를 분석할 차례인데, 이 내용도 공부를 한번 쭉 자세히 해본 학생이면 알아차렸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이것도 기출 및 EBS에 자주 나온 내용이다.

칸트: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며, 정당한 보복의 수단이지만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2021년도 수능완성]

칸트: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2021년도 수능특강]

한번 배웠겠지만, 칸트는 인간성 정식에서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 하라."**라고 한 적이 있다. 이를 확장해서 칸트는 비록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은 내용이다.

④ 루소, 베카리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루소와 베카리아는 각각 사형 찬성론,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똑같다. 만약 살인범이라면 루소는 사형이 이에 상응하다고 볼 것이고,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이에 상응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둘 다 사회 계약론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루소: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021년도 수능완성]

베카리아: **사회 계약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형벌이 나온다.**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형벌은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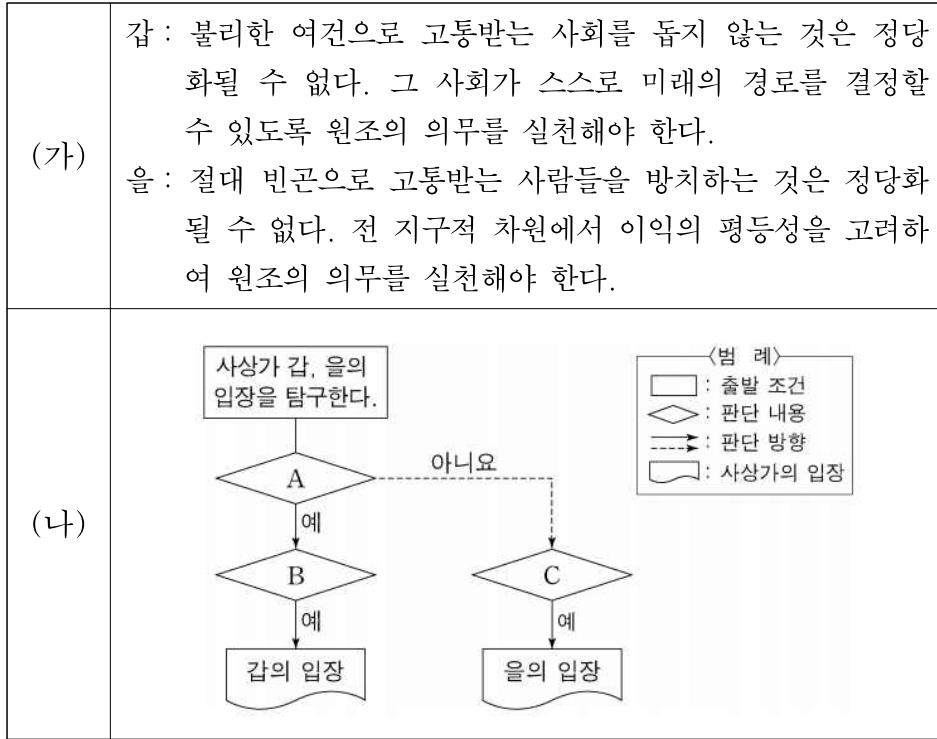
[2021년도 수능완성]

루소와 베카리아를 더 자세히 분석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그것은 차기의 콘텐츠에서 완전히 다루도록 하고, 위의 내용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⑤ 베카리아, 루소: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사형제에 주로 등장하는 사상가로는 벤담, 베카리아, 루소, 칸트가 있다. ⑤번 선지는 이 4명의 사상가 모두 동의할 선지이다. 애초에 이 사상가들의 형벌론은 이상적인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정함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라는 개념은 이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상위 개념이며, '형벌로 인한 이상적인 상태'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리고 이 선지를 바꾸어 말하면,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와 같은 기출 선지가 있다. 이 선지도 사형제의 사상가들이 모두 동의한다고 기억해 두면 된다.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조의 근거인가?  
 ㄴ. B: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가?  
 ㄷ. C: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를 확립하는 것인가?  
 ㄹ. D: 원조 주체는 원조 결정 시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출제 의도] 롤스, 싱어의 해외 원조론 이해

갑: 롤스, 을: 싱어

[정답 해설]

ㄴ. 롤스: 천연 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가?

이 선지는 EBS에서도 자주 나온 선지이기도 하고, 롤스의 해외 원조론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다. 롤스의 해외 원조론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러나 그는 한 국가가 천연 자원이 부족하다고 고통받는 사회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질서 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주로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치적 요소, 문화적 요소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롤스는 이러한 요소들이 잘 구비되어 있다면 천연자원이 부족하여도 고통받는 사회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롤스: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부가 빈약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질서 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천연자원의 유무나 빈곤이 아니라 정치 문화, 정치적 덕목 등이다.

[2021년도 수능완성]

ㄷ. 롤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를 확립하는 것인가?

롤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취된 이후에는 심지어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되고, 원조의 최종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2021년도 수능완성]

이 선지는 너무 쉬워서 내용 해설은 매우 짧게 하고 넘어간다. 롤스의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 즉 정치적 문화 등이 결여된 사회가 자주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렇기에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ㄷ 선지는 맞다.

이와 더불어 하나 더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2021 6평에 다음과 같은 선지가 나왔다.

롤스: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O)

[2021년도 6월 모의평가]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될 것이다. ㄷ 선지 바로 밑에 첨부한 제시문에서 원조 대상국에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러한 까닭은 원조 대상국이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원조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된다면, 그들은 이미 자유로운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공동체에 종속되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6평 선지와 9평 선지에 나타난 롤스의 해외 원조의 의의를 연관지어 학습하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르. 싱어: 원조 주체는 원조 결정 시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가?

싱어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이다.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자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 중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한다.'가 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공리를 도출할 때 자기 자신도 포함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만을 고려하여 이익을 계산한다고 하는 진술이 있으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를 쉽게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A(나)	B	C	D	계
손익	-50	+10	+10	+10	-20

②

	A(나)	B	C	D	계
손익	+200	-50	-50	-50	+50

위 두 사회의 구성원은 A, B, C, D가 전부라고 가정한다. 일례로 공리주의자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로서 쾌락과 고통의 양만을 측정하는데, 그렇다면 벤담의 입장에서 위 두 개의 상황 중 어떤 것을 정의롭다고 볼까? 당연히 ②번 사회이다. ①번 사회에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익 총합보다 나 자신의 고통이 더 극심하게 크면 사회 전체로서는 손해이다. 왜냐하면 벤담은 개개인의 손익의 총합이 곧 사회의 손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②번 사회는 나를 제외한 사람들의 고통의 합보다 나 자신의 쾌락이 더욱 극명히 느껴진다는 설정이다. 그래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50이라는 행복이 남기 때문에 ①번 사회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이다.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이 그렇다.

싱어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상을 토대로 해외 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싱어는 해외 원조를 함으로써 ①번 사회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면 부정의하다고 본다. 원조 대상자가 수혜받은 이익보다 원조 제공자의 고통이 더 크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싱어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해외 원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A(나)	B	C	D	계
손익	-10	+100	+100	+100	+290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아니, -10만권의 손해밖에 안 봤는데, 어떻게 나머지 구성원들의 이익이 100만권 오를 수가 있는 것인가?” 이는 다음과 같다.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2만원 정도는 하루 용돈일 수 있다. 일상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도 아깝고 기분 나쁜 정도이지, 큰 고통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이다(물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하지만 그 2만원을 일반적인 초등학생에게 준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그 학생에게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행복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리로, 원조 대상자의 처지는 원조 제공자보다 더 다급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고, 같은 돈으로도 받아들이는 행복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싱어는 해외 원조를 할 때, ②번 사회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을 위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싱어: 우선 저는 해외 원조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입의 1%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5% 이상을 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들 대부분이, 제가 제시한 별로 크지 않은 척도에 따라 기부금을 낸다면, 우리들 중에 누구나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수능완성]

[오답 해설]

ㄱ. 롤스O, 싱어X: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조의 근거인가?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세울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롤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롤스, “정의론”-

하지만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의 근거로 보지 않았다. 차등의 원칙은 한 공동체의 정의로서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제 원조에까지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롤스의 이러한 입장은 찰스 베이츠라는 학자에 의하여 비판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 부정할 선지이다. 한편, 싱어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싱어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롤스와 싱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분배적 정의의 중심 문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그 주요 제도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이념은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이용하고 있다.

을: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일 것이다.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세 원리는, 소유물 취득의 원리, 소유물 이전의 원리, 이 두 원리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리이다.

— < 보 기 > —

ㄱ. 갑: 사유 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ㄴ. 을: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ㄷ. 을: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된다.

ㄹ. 갑, 을: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출제 의도] 롤스, 노직의 분배 정의론 이해

갑: 롤스, 을: 노직

[정답 해설]

ㄴ. 노직: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6월 평가원 선지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은 선지가 출제되었다.

노직: 사회적 유용도와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O)

[2021년도 6월 모의평가]

이 선지만 보고 “아, 노직은 정형적인 분배 정의를 옹호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맥락을 자세히 파악하자면 다음과 같은 지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직: 차등의 원칙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定型)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제시문]

노직은 이렇게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을 주장한다. 약간 헷갈리지 않는가? 일단 노직이 말하는 비정형적인 것이 무엇이고 정형적인 것이 무엇이고를 파악하기 전에, 선지를 보는 법을 한 번 파악해보자.

노직: 사회적 유용도와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

노직: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분명히 이렇게 대충 보면 노직이 정형적인 분배 정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선지는 모두 기존의 분배 정의를 비판하는 선지이다. 노직은 분배 정의를 정형적인 원리와 비정형적인 원리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정형적인 원리: 사회적 유용도, 도덕적 공과, (롤스의)정의의 원칙 등 분배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

· 비정형적인 원리: 일정한 기준 없이, 과거의 상황 혹은 과거의 행위 등으로 소유권의 정당성이 변할 수 있는 원리

ex) A와 B는 각각 PC방과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와 B는 모두 성실히 일해서 알바비를 받는다. 그러나 A의 알바비가 과거에 사업주의 횡령을 거친 돈이라면? 그 소득은 A가 특별한 과오를 짓지 않아도 부정의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한편 B의 알바비는 과거의 현금 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소득이라면? B의 소득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과거의 상황에 따라 정당성의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 노직이 주장한 '비정형적인 원리'의 예시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다음 선지를 한번 보자.

노직: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가진다.(X)

[2017년도 윤리와 사상 수능]

이 선지는 2017년도 윤리와 사상 수능 선지인데, 범위가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도 좋다. 이 선지는 비록 2점짜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위에서 비정형적인 원리의 예시를 한번 읽어보니 이해가 잘 가지 않는가? 설명한 대로,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벌 소득이라도 그 과거의 재화 흐름에서 부정의가 존재한다면 그 소득은 부정의하기 때문에 위 선지는 노직의 입장에서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

다시 위에서 연보라색의 형광펜을 칠한 두 개의 선지로 되돌아가보자. 위 선지를 합치면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 등에 따른 것들이고 이는 재분배도 요구한다.' 그래서 노직이 이것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분배 정의가 정형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정형적인 원리들이 저러한 특징을 가졌으니까, 저 원리를 따르지 말자는 것이 노직의 핵심 주장이다.

ㄷ. 롤스, 노직: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

노직은 당연히 동의할 입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 것이고, 롤스도 동의할 입장이다. 왜냐하면 롤스는 정의의 원칙 중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자유의 종류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것은 **기본적 자유들이** 이런 자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

-롤즈, 『정의론』 -

따라서 위와 같이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도 기본적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ㄷ선지는 옳은 내용이다. 워낙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선지에 대한 해설은 여기에서 끝낸다.

[오답 해설]

ㄱ. 롤스: 사유 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아까 ㄷ 선지에서 롤스는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도 기본적 자유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롤스의 사상에 있어서 사유 재산권의 침해는 곧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차등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당연히 아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제1원칙은 제2원칙에 항상 우선한다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것이다. **따라서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제1원칙에 속하는 사유 재산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기본적 자유가 항상 제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롤스는 다음의 조건이 있다면, 기본적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권리들의 제한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적 여건이 이러한 제반 권리들의 효과적인 확립을 허용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제한은 그것들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을 때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 **평등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자유가 향유될 수 있도록 문명의 수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옹호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원칙의 서열적 순서를 택하는 데 당사자들은 그들 사회의 조건이, 그 조건이 어떠한 간에, 평등한 자유의 실질적 실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롤즈, 『정의론』 -

ㄷ. 노직: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된다.

형광펜 친 부분은 노직의 '소유권으로서의 정의'에서 '취득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취득의 원칙이란 노동을 통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는 소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노직은 타인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도 소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양도의 원칙'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벌든, 선물로서 양도를 받든 간에 그 재화의 과거로부터의 흐름에서 부정의만 없다면 소유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도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다.**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갑: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을: 물리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규정되던 기존의 폭력 개념은 불완전하다. 우리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는 소극적 평화 상태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상태라 할 수 있다.

— < 보 기 > —

ㄱ. 갑: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우호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ㄴ. 갑: 평화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ㄷ. 을: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ㄹ. 갑, 을: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출제 의도] 칸트, 갈통의 평화론 이해

갑: 칸트, 을: 갈통

[정답 해설]

ㄱ. 칸트: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우호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수능특강 175p]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6가지, 확정 조항 3가지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ㄱ 선지의 내용은 확정 조항 3번에 관한 것이다. 이 내용은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취급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물론 외국인이 자국민을 우호적으로 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칸트는 원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도 앞선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애가 아니라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호란 외국인이 타국 땅에 받을 들여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대적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 국가의 성원은, 외국인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 아니면, 그 외국인을 추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외국인이 타국 땅에서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수능특강 175p]

따라서 ㄱ 선지는 옳은 내용이다.

ㄷ. 갈통: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갈통은 폭력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나누었다. 갈통은 범죄, 테러,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어진 상태로는 소극적 평화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여야 진정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폭력의 예방을 통해 폭력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여야 적극적 평화도 따라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갈통은 평화와 폭력은 인간의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생물체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에서 갈통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폭력을 포함해서 성별 간, 세대 간의 폭력, 나아가 인간 내면, 즉 감정의 억압과 같은 정신 내부의 폭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까지 그 실체를 밝히고 처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래엔 교과서 209p]

ㄹ. 칸트, 갈통: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① 칸트

이 내용은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중 1항에 해당된다. 그 내용은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칸트는 미래에 전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사실상 휴전에 지나지 않으며, 적대 행위의 연기일 뿐이고,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 영구적인 국제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ㄹ선지는 칸트의 입장에서 동의할 선지이다.

② 갈통

갈통에게 전쟁이란 범죄, 테러와 같이 직접적 폭력이다. 갈통은 상술했듯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도 제거하고, 나머지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과 같은 간접적 폭력도 꼭 제거하여야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ㄴ. 칸트: 평화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 “평화 연맹은 하나의 단일 국가로서 기능해야 한다.”와 똑같은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지도 그동안의 EBS와 수능 기출문제에서 수도 없이 출제된 말이라서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당연히 칸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거를 대보자면, 칸트는 국가 형성이란 그 내부에 권력 체계가 형성되는 것을 수반하는데, 피지배자는 모두 동일한 민족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여 세계 단일 국가가 형성된다면, 피지배자가 모두 같은 민족이 아니므로, 단일 민족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에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 연맹은 국가적 권력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연방 체제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민족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장소로서, 시민적 체제와 유사한 체제로 함께 들어설 것을 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소위 국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나 제 민족 합일 국가는 아니다. 이와 같은 국가에는 오히려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지배자(입법자)와 피지배자(복종하는 자, 즉 민족)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많은 민족이 단일 국가 안에 흡수되는 경우, 그것은 단일 민족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칸트, “영구 평화론”-